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71호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 번호	제71호
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6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이태모, 조배식,
장진호, 윤금숙

1. 제안이유

의원의 시의적절한 발언과 질문을 통한 의회의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·
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
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수사
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함(안 제7조제1항)
- 나. 표결할 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
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5조)
- 다. 시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 또는
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3조의2)
- 라. 회기 중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3조의3)
- 마. 제73조의3제3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
것으로 함.(안 제73조의3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45조, 「논산시의회 회의 규칙」
제45조, 제73조의2, 제73조의3 등
- 나. 기타사항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5. 20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제45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“의결로 회기중”을 “회기 중”으로, “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”을 “시정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

각각 삭제한다.

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괄질문·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(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)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질문·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.

2.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.

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,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

1. 신청서 제출일 : 시정질문일 5일 전

2. 질문서 송부일 : 질문일 4일 전

3. 답변서 제출일 : 답변일 1일 전

제73조의3제1항 중 “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” 을
“회기 중에” 로, “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” 을 “현안
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” 로, “의장” 을
“할 것을 의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
하는” 을 “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” 으로, “출석대상
공무원을 기재한 해당” 을 “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

기제한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그” 를 “필요한 경우 그” 로, “정한다” 를 “정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73조의3제6항(종전의 제5항) 단서 중 “그 시간 3분의 1 범위” 를 “그 시간을 20분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10분” 을 “15분” 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시간을 10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73조의3제7항(종전의 제6항)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 의원 외 4명

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

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
-----.

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괄질문·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(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)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

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

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

관질문·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.

2.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.

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,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

1. 신청서 제출일 : 시정질문일 5일 전
2. 질문서 송부일 : 질문일 4일 전
3. 답변서 제출일 : 답변일 1일 전

<삭 제>

<삭 제>

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
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“긴급현안 질문”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 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
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
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

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-----

회기 중에 -----

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

또는 관계공무원에게 -----

----- 할 것을 의장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-----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-----.

③ -----

----- 필요한 경우 그 -----

----- 정하거나

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

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⑥ -----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45조(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)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(公訴)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□ 「논산시의회 회의규칙」

제45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(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)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73조의2(시정질문)(신설 2020.9.21.)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

-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
-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-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(신설 2020.9.21.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“긴급현안질문“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“질문“은 “긴급현안질문“으로 본다.